

第282回國會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錄 第 3 號
(臨時會)

國會事務處

日 時 2009年4月17日(金)

場 所 文化體育觀光放送通信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문화재청
 - 다. 방송통신위원회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審査된案件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문화재청	
다. 방송통신위원회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4
33.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4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 · 김우남 · 강성천 · 송훈석 · 조진형 · 박순자 · 정진섭 · 신상진 · 박민식 · 이명규 · 정해걸 · 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15
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 · 권영세 · 성윤환 · 이경제 · 김옥이 · 송훈석 · 구본철 · 김무성 · 한선교 · 유정복 · 임두성 · 유승민 · 박근혜 · 홍정욱 · 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15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5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5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 · 강기갑 · 김성수 · 홍희덕 · 최규성 · 권영길 · 이윤석 · 정병국 · 김우남 · 이정희 · 김상희 · 김영진 · 이상민 의원 발의)	15
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 · 김소남 · 송영길 · 김영진 · 박은수 · 강창일 · 김성곤 · 이용삼 · 김재윤 · 김진표 · 이상민 · 김희철 · 안규백 · 안민석 · 양승조 · 김상희 · 백재현 · 이용경 · 김옥이 · 최재성 의원 발의)	15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 · 김소남 · 김태원 · 신지호 · 안경률 · 원유철 · 유정현 · 이범래 · 이은재 · 장제원 · 정갑윤 · 조진형 · 김성조 · 이인기 의원 발의)	15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진성호 · 현경병 · 조전혁 · 강성천 · 황영철 · 박선영 · 김효재 · 강승규 · 윤석용 · 김동성 · 박준선 · 유정현 의원 발의)	15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진성호 · 백성운 · 조전혁 · 정병국 · 이달곤 · 안형환 · 조진래 · 강승규 · 성윤환 · 김금래 의원 발의)	16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 · 임영호 · 유기준 · 김태원 · 안상수 · 이윤석 · 이학재 · 박선영 · 권영세 · 신성범 · 김성수 · 안효대 · 임동규 · 이성현 · 유원일 · 김효석 · 신상진 · 정해걸 · 김소남 의원 발의)	16
1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 · 강승규 · 고흥길 · 김금래 · 나경원 · 나성린 · 박기준 · 배은희 · 변재일 · 송훈석 · 안형환 · 이경제 · 이정현 · 진성호 · 최구식 · 한선교 · 허원제 의원 발의)	16
1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장세환 · 최문순 · 김성곤 · 김춘진 · 우제창 · 유성엽 · 김종률 · 이낙연 · 이명수 · 변재일 · 조배숙 · 김영진 · 이종걸 · 서갑원 · 강창일 · 강봉균 · 김재윤 · 박상돈 의원 발의)	16
1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 · 김낙성 · 김용구 · 박상	

돈 · 이명수 · 이용희 · 이재선 · 이진삼 · 임영호 · 심대평 의원 발의)	16
1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안민석 · 김춘진 · 정영희 · 권영진 · 김세연 · 박보환 · 조전혁 · 권영길 · 김용구 · 임영호 · 권선택 · 이영애 · 이명수 의원 발의)	16
1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 · 안효대 · 원희룡 · 김춘진 · 임동규 · 김성수 · 정양석 · 원희목 · 우제창 · 이시종 · 이한성 · 정해걸 · 현기환 · 박영아 · 최구식 · 한선교 · 손범규 · 박대해 의원 발의)	16
19.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 · 유승민 · 정영희 · 유기준 · 유성엽 · 김태원 · 이한성 · 김성수 · 김효석 · 임동규 · 이시종 · 황영철 · 박준선 · 김기현 · 안상수 · 이화수 · 안효대 · 김소남 · 허태열 · 송영선 의원 발의)	16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병국 의원 대표발의)(최병국 · 최연희 · 최인기 · 이진복 · 정갑윤 · 정희수 · 홍장표 · 강창일 · 윤석용 · 손범규 · 정의화 · 장광근 · 이해봉 · 최재성 · 안상수 · 강길부 · 주성영 · 김옥이 · 유기준 · 주호영 · 이인기 · 강석호 의원 발의)	16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 · 이종걸 · 조영택 · 홍재형 · 이춘석 · 오제세 · 강봉균 · 양승조 · 김종률 · 김상희 의원 발의)	16
2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김효재 · 노철래 · 한선교 · 김성순 · 유기준 · 강창일 · 박대해 · 김성태 · 윤상현 · 안홍준 · 송영길 · 주호영 · 황우여 · 김정권 · 이성현 · 손범규 · 유성엽 · 안상수 · 김종률 의원 발의)	16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정부 제출)	16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 · 김소남 · 이한성 · 허범도 · 임태희 · 송영선 · 이성현 · 진성호 · 이혜훈 · 김정권 · 손범규 · 권영세 · 나성린 의원 발의)	16
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안민석 · 김춘진 · 권영길 · 정영희 · 조전혁 · 권영진 · 박보환 · 김용구 · 임영호 · 권선택 · 이영애 의원 발의) · 16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 · 안민석 · 김춘진 · 권영길 · 정영희 · 조전혁 · 권영진 · 박보환 · 김용구 · 임영호 · 권선택 · 이영애 · 이명수 의원 발의)	16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 · 권영진 · 김성식 · 김성태 · 김영우 · 김정훈 · 이계진 · 이진복 · 주광덕 · 현기환 · 황영철 의원 발의)	16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6
30.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경재 의원 대표발의)(이경재 · 이인기 · 이한성 · 이성현 · 홍사덕 · 구본철 · 백성운 · 강성천 · 정영희 · 정진섭 · 손범규 · 임두성 · 김영우 · 손숙미 · 양정례 · 이윤성 · 송영선 · 조진래 · 김무성 · 이윤석 · 김정권 · 김태원 · 이학재 · 한선교 · 강승규 · 성윤환 · 권영세 · 김금래 의원 발의)	16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32. 전과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7

(10시16분 개의)

○위원장 **고흥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오늘 대충 의사진행 내용

을 간단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예결소위에서 심의해 주신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마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심사보고까지 끝냈던 두 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끝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의안에 대한 상정 및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걸리는 시간은

12시 15분 정도로 끝내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유의해 주시고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 계시는 위원님들은 대체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 안 들어가신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아주 압축해서 해주셨으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결을 해야 되는데 아직 위원님들이 의결정족수가 되지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변재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까.

○**위원장 고흥길** 자료 요청하십시오.

○**변재일 위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잘 들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도 잘 좀 들어 주시고요. 4월 14일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가 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 감청자료에 누락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0년부터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사업자로부터 구분해 보고받지 않고 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통신비밀법 제1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매년 2회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을 방통위에 통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구 정통부는 2000년부터 계속해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를 특정 보고사항이라는 항목에 별지를 통해서 사업자로부터 별도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특정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 사본 양식을 보내주시고 이 별지의 양식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중 법원 승인서 없이 긴급 제공한 현황이라는 이름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안에 세부 내역이 무엇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00년 이후 연도별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통계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 제출 시에는 요청 기관별, 요청 수단별 승인서의 제출과 미제출 건수를 분리해 주시고 승인서 미제출 시 미제출 사유내역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이후 매년 사업자로부터 통계를 보고받아 왔으면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통신감청 협조 통계자료에서는 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

를 누락시켜 왔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국회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대한 보고양식이 2008년도 신정부 들어와서 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사업자로부터 보고받는 양식에 삭제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삭제된 시기와 삭제한 경위,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흥길**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성원이 열다섯 분으로 꼭 의결정족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문화재청

다. 방송통신위원회

(10시21분)

○**위원장 고흥길**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및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해 주신 전병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님과 이정현·진성호·최구식·허원제·조영택·김창수 위원 등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전병헌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전병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전병헌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최구식 위원, 이정현 위원, 진성호 위원, 허원제 위원, 조영택 위원, 김창수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지하고도 치열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예산 심사의 기본 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의 비중이 0.05%로 그 규모가 미흡하다고 보아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에 부합하면서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되는 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는 한편, 국회가 심의·확정한 사업에 대

해서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대책을 강구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입니다.

소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방학 중 및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656억 5100만 원을 증액하는 한편, 선비문화체험 교재개발사업 예산 7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88억 700만 원이었으나 1649억 5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예술 및 언론기관 인턴 활성화사업은 침체된 문화예술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미취업 예술 전공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인 사업이라는 점에서 당초 정부안 13억 4000만 원에서 300억 원을 추가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인턴 배정 시에 지방 소재 문화예술기관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문예회관 등에 대한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정부가 제출한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사업’을 ‘문화예술 및 언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하여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신문사 등 언론기관에도 인턴직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방과 후 및 방학 중에 예능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학 중·방과 후 학교문화예술교육사업’에 신규로 197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동 사업을 반영하게 되면 저소득층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화예술 인력의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소위원회에서는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고 최근 체력이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방과 후 체육교실 지원사업에 145억 3800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지역밀착형 도서관인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사업에 신규로 800억 원을 반영하여 사서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들의 문화향수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전통사찰 보존·정비 지원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에 89억 9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보수·정비가 시급한 전통사찰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수·정비작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으로 보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20억 원을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개정된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신설된 한국전통사찰문화연구원을 설립하는 데에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 28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신문사를 비롯한 신문 산업의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신문 산업의 경영여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증액하였으나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여러 위원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그 구체적인 지원규모 및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총 83억 1000만 원을 지원하되 인턴사원 지원에 필요한 예산 30억 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문화예술 및 언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사업 예산을 300억 원 증액함에 따라 이 사업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문발전기금에서 16억 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서 2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대조건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원 10억 원은 언론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약 50억 원의 지원분은 언론기관에 대한 대출지원기금이기 때문에 대출기금사업은 활용도가 낮고 또 추가로 대출기금사업이 부족할 시에는 이를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첨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콘텐츠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개인의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7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동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선정에 있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 측에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무대예술인 재교육사업에 5억 원, 다양성

영화 마케팅 지원사업에 7억 8300만 원, 불법복제물 모니터링 강화 및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컨설팅 지원사업에 27억 1000만 원, 취약계층 청소년 게임 과몰입 교육상담사업에 10억 8000만 원, 문화소외지역 유희시설 문화공간화사업에 45억 원을 각각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감액사업을 말씀드리면, 선비문화체험 교재개발 사업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선비문화체험 연수 프로그램의 교재내용이 부실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였습니다. 다만 전국의 선비문화체험 연수시설에서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대표성 있는 집필진을 선정하는 등 사전에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가 필요하므로 향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7억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무사 공간 활용 문화예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향후 기무사 공간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으로 조성할 경우 예산이 중복 집행될 우려가 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다수의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정부안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공동제작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 심사한 결과 외국 영상산업의 국내 유치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았습니다만 충분한 사전계획 검토를 바탕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조사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53억 원을 증액하는 한편 독도·울릉도 영상홍보자료 제작사업 예산 10억 원을 감액하여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은 591억 4000만 원이었으나 43억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증액사업에 대해서,

첫째,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조사사업에 대해 2009년 본예산에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해외유출문화재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소재 우리문화재 조사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3억 원을 증액하

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관람환경 및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5대궁 및 13개 능의 관람환경과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 본예산에 1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경복궁, 창덕궁은 외국 관람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국내외 관광객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편의시설을 고궁의 품격과 이미지에 맞게 신축하기 위해 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울릉도 영상홍보자료 제작사업은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여 학술연구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10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에서 볼 때 동 사업은 시급성과 적절성이 낮고 이번 추경예산안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독도 자연유산 홍보물 제작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동 사업예산안 1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충무공 기념관 건립사업 20억 원, 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사업 261억 4000만 원, 문화재보수정비사업 300억 원은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288억 원에서 4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통신서비스에 대한 공신력 있는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나 이용자 수가 적은 WiBro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과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30억 원 중에서 4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전파자원 총 조사사업은 전파환경과 무선국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함으로써 전파자원

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인터넷망 고도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방송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는 민간통신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영역이므로 국가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IPTV를 통해 제공되는 교육콘텐츠가 현재 상태로는 부족하므로 교육효과가 미미할 수 있고 또한 동 사업을 통하여 IPTV 사업자에게 편향된 지원을 할 경우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은 IPTV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의 인터넷 속도가 증가하더라도 학교가 부담하는 인터넷 이용요금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도록 하고 NIS 협약 만료기간인 2010년 말까지 정부가 투자한 450억 원을 전액 상계토록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추후 학교가 공정한 환경에서 유료방송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철저히 보장할 것을 동 사업의 부대조건으로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토론 시 거론된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환경 구축사업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산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IT분야의 성장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중요성은 인정할 수 있었으나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본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전병헌 소위원장님 대단히 감

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아주 면밀하고도 상세한 심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할 순서입니다.

위낙 소위원장께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견 개진이 거의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혹시 의견 개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님!

○이용경 위원 예결소위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살리기, 이것이 주이지만 예산을 많이 증액하는 것이 꼭 경제에 좋으나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좋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어제 예결특위에서도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부문에만 써야 되겠다 이러한 것이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논의에서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일자리 창출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 증액된 것, 예를 들어서 무대예술인 재교육사업이라든지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한국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다양성영화 마케팅 지원사업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점검해 봤습니까?

○위원장 고흥길 전병헌 소위원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전병헌 예, 여러 가지 점검을 해 봤고요. 정부의 예산편성 구조를 보면 이번에도 상당부분 SOC사업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SOC사업은 사실 지금 상당히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커다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여집니다. 일종의 기계 일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문화사업분야 그리고 통신방송분야는 모두가 다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방송통신 소관의 예산과 사업을 증액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사람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께서도 예결위원이십니다. 저도 예결위원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를 예결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반영하고 추구토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뒤의 질문은, 원래 정부에서 나온 추경예산안에는 각 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몇 개씩 창출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논의할 때도 그런 데이터가 같이 제공되었습니까?

○**위원장 고흥길** 대충 백데이터가 되어 있었습니까?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것이 아마 정확하게 숫자가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소위원장 전병헌** 예, 백데이터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서 당초 기재부하고 추경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이해 부족으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효과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영향력이나 규모가 큰 부서에 집중하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문제가 있게 편성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백데이터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리고 점검한 상태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 더……

○**위원장 고흥길** 예.

○**이용경 위원** 지난번에 추경 예산에 대한 토론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바가 있고 예결소위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것이 채택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중소기업 또 창업 기업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그러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것을 시작을 하는 결정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통위에서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200여억 원에 대한 승인은 안 되었지만 다만 얼마라도 여기에 투입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도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200억 원 안 되었는데 일단 사업을 시작하려면 좀 축소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얼마 정도면 시작을 할 수 있으신지 그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한 50억 원 정도만 해주신다면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100억 원 효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경 위원** 50억 원 정도면 원래 안에 네 꼭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몇 번째 것이지요? 마지막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실장이 설명 좀 해주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명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 사업이 센터 구축비용하고 네트워크 회선 비용, 센터 관리운영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실험 연구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 대 1 매칭펀드로 하기 때문에 5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주시면 100억 원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50억 원 정도를 해주시면 일단은 테스트베드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경 위원** 그런데 예결소위에서 나온 보고에 의하면 면밀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다음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 말하시는 그 분야는 면밀한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방송통신위원회기획조정실장 이명구**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당장이라도 이것을 착수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를 면밀한 계획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추경에서 확보 해주시면 저희는 착수할 준비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저는 아무튼 50억을 증액해 가지고 일단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감사합니다.

전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소위원장 전병헌** 심사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들께서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경 위원께서 지난번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안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했고요.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국회에

특별하게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었고 그리고 어제 보고 과정에서 일단 235억 원을 투자하면,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클라우드 인터넷 서비스 환경 구축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방통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완성 단계까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순차적인 투자계획을 갖고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재원이 많으면 여기저기 다 투자를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엄격하게 얘기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종의 응급조치용 사업이고 그리고 또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대부분 다 충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아주 중대하지만 그러나 방통위 자체에서 계획이나 투자의 플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 두 페이지짜리의 보고서를 가지고 235억 원을 요구하는 것은 예의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순서가 좀 바뀌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원에서 이 사업의 그런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절차와 그리고 완성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은 방통위에서 보다 더 계획을 완성도 높게 해서 국회에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본예산이 내달 오류월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나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선 본예산에 편성토록 하자는 취지로 어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어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또 오늘 의사일정이 법안 상정을 통해서 대체토론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면 그리고 무리가 없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고흥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윤환 위원님.

○성윤환 위원 안동에 가면 도산서원에서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고 있고 영주에서도 선비문화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기업체 신입사원들도 들어가서 선비문

화를 체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체험한 수강자들의 말을 들어 보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석연찮은 점이 있습니다. 삭감된 예산이 모두 한정되어 대구·경북 지역 예산이 그대로 다 삭감되어 있습니다. 소위원 중에 대구·경북 출신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비문화 수련과 관련한 책자 개발의 필요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삭감을 했습니다. 또 독도 관련 예산을 완전히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로서는 차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전 위원장님.

○소위원장 전병헌 삭감을 하고 보니까 대구·경북 예산이 꽤 버렸네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두 예산 모두가 다 당초 소관부처에서 기재부에 올렸던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두 예산이 모두 다 중간에 끼어든 예산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힘이 변칙적으로 작용이 되어서 변칙적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성격이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저희들이 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한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고한 대로 울릉도·독도 영상홍보 제작 예산은 이미 기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그 자체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게 없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반영할 정도로 시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본 점이 있고요.

그다음 선비문화 체험 문제는 지난번에 많은 논란 끝에 본예산에 30억 원을 이미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선비문화 체험 과정 속에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 교재를 개발하는 것까지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는 판단을 했고, 그리고 선비문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산서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 여러 지역에 단위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파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다 총체적으로 다 합의의 틀을 이루어서 공통된 선비문화로서의 교재가 개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다 더 심도 있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도록 해서 예산을 배려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이라는 판단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윤환 위원** 지난번에 반영된 30억 예산은 수련생들의 숙박을 위한 시설비 지원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는 정말 더 필요한 교재 개발 비용입니다. 이것을 깎으면 시설만 있고 콘텐츠가 없는 엉터리 같은 것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고해 줄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흥길** 전병헌 위원님.

○**소위원장 전병헌** 지금 방금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상당 규모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상당 규모의 예산을 늘렸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늘린다고 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늘리면 그 정도의 감액을 해야지만 국민의 채무부담도 줄어 들고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문화부 관련 예산은 너무나 소규모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화부 관련 예산은 말씀드린 대로 타 부처의 일자리 창출 예산에 비해서 훨씬 사람 일 자리를 늘리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문화부 예산을 늘리자는 측면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담을 감수하고 증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삭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또 증액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때문에 지금 삭감한 부분이 중요하지 않아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좀 추후로 하더라도 크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소규모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라도 삭감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문화부의 다른 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의 육성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단 한 푼도 삭감하지 않으면서 예산만 엄청나게 증액해서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 위원회의 예산 심사에 대한 신뢰도 문제는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분야의 증액 부분까지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성윤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본예산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서, 지금 본예산이 5월, 6월 바로 다음 두 달 내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때 반영하는 노력을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흥길** 성 위원님, 이 부분은 본예산 때 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한다는 요청을 위원장으로서 제가 정부 측에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안형환 위원님.

○**안형환 위원** 추가된 예산 가운데 방과 중·후 학교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이 새로 책정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경기가 안 좋으면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방과 후에 학교에 미술과 음악 과정이 설정됨으로써 기존의 영세 피아노학원들 미술학원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보통 서민 밀집지역에 있는 영세 학원들은 원장 혼자 하거나 또는 한두 명의 고용인, 피아노 전공이나 미술 전공한 분을 두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방과 후 과정이 새로 신설되면 기존의 일자리가 또 사라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 하나는 학교에 그런 과정이 설정되면 실질적으로 서민층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목을 설정할 때 한 학교에 미술, 음악을 다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그중 한 학교에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서민층 아이들 학부모의 경우 대개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런 과정이 설정될 경우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개설해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대로 하되 활용하는 차원에서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해서 학교에다가도 개설하고 또는 이 바우처를 서민층 자녀에게 줌으로써 가까운 데 인근 학원에서 영세학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또 학생들한테 선택

권도 주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예산을 그대로 두되 방과 중, 방과 후 학교 문화예술교육이 아니라 여기에서 ‘학교’자를 빼고 ‘방과 중·방과 후 문화예술교육’ 해서 학교뿐만 아니라 바우처제를 도입해서 인근 어려운 영세 문화예술학원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래서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교’자만 빼면 문화부에서 예산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고흥길** 좋은 생각이십니다.

전병헌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소위원장 전병헌** 저희가 그 문제도 사실 심사 소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우리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공교육이 전혀 사교육 부분을 흡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가장 보편화되고 일반화되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하고 있다, 이런 사회풍조는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좀 가진 상태에서 했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존경하는 안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세 밀집지역의 영세학원들에 대한 경기 문제, 일자리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5000개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했기 때문에 학교가 이렇게 통합되어서 운영되거나 그런 정도의 예산은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주로 방학 중 사업으로 보다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편의에 따라서 어떤 예산의 집행이 너무 획일적이고 고착화된 그런 예산의 집행은 역시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안형환 위원님의 지적이 일부 타당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제도를 해당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의 과정에서 도입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안형환 위원** 그렇다면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학교라는 명칭을 빼야만이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소위원장 전병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거기에서 학교라는 말을 빼게 되면 어떤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기본예산 과목에도

다 있습니다. 문화바우처, 물론 교육 부분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노하우를 꽤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섬세하게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뺄나 마냐라고 딱 정하시면 그것은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고 지적하신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안형환 위원** 학교를 빼야만이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런 면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예결위 넘어가는 과정에서 위원장하고 3당 간사들에게 맡겨 주시면 정부 측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학교를 빼느냐 존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그냥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안형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신 말씀인데 다만 집행하는 측 입장에서 보면 학교를 뺄 때는 상당히 또 혼란이 예상됩니다. 여기 저기에서 다 ‘우리도 바우처 달라’ 할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통제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진성호 위원** 꼭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말씀하세요.

○**진성호 위원** 저도 예결위원인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어제 굉장히 격론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 안건은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우리 김창수 위원이나 서로 양보를 해서 이렇게까지 왔지만 격론이 많았는데 그중의 하나가 제가 혼자서 이야기하다가 실패한 부분인데 이것은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존경하는 이용경 위원이 말씀하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질문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병헌 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게 첫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들 사이에. 그리고 방통위원회도 제가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들한테 이게 뭔지를 설득시키는 것이 사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문방위가 이것을 이번에 다루지 않으면 잘못하면 우리 문방위원들의 수준이, IT에 관련된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서 우리가, 이것은 시간 싸움인데 그 시간을 놓쳐 가지고, 한두 달 놓쳐 가지고 미국이나 다른 유럽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73억이라는 이 예산을 다 우리가 못 주면 100억이나 50억이나 일단 줘서 시험사업부터 하게 하면 중소기업이 ‘아, 대한민국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구나’ 하고 나름대로 인적·물적 투자를 할 텐데 지금처럼 아예 올렸는데 잘라 버렸다 이렇게 되면 ‘아, 이것은 정부가 관심이 없구나’ 해 가지고 지금 시간을 놓치면 상당히 우리나라의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제도 방통위 전문가들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그냥 말로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나름대로 현장을 가 보든지 또는 이런 것을 보여 줘야 되는데 어제 안건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럴 처지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용경 위원도 그렇고 저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들어 본 것으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의 핸드폰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기에서 논의를 해서 우리가 50억이나 100억이라도 일단 시도만이라도 하려고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좀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방통위가 마련할 수 있도록 한번 도와주는 게 어떤가 제가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전병헌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위원장 전병헌 지금 진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여기에서 논의해서 결정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에 대해서 아까 방통위원장님께서도 내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것 숫자로 그냥 쉽게쉽게 간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추경예산의 대부분이 국가채무를 발행해서 하는 것인데 방통위원회에서 완벽한, 그리고 완성된 계획도 없이, 그리고 한두 위원한테 가서 설명해서, 설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분의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한두 푼도 아니고 235억 원을 책정하겠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면 예산이 많이 남고 유휴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반영해 주면 좋지요, 그거야. 어떤 것은 나쁘니까? 더군다나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 기재부에서 추경안에 반영을 하려고 했다가 기재부에서 이것은 이번 추경안에는 적절치 않다고 그래 가지고 기재부에서도 뒤로 미루어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장시간 토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이해의 폭을 갖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단순히 235억이 아니고 50억이 아니라 단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이 투입되면 그것이 일종의, 어저께 얘기한 대로 시드머니가 되어서 앞으로 230억이 될지 아니면 2300억이 될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예산 배정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더 이상 어저께 우리가 다른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종결해서 이의 없게 해서 이 부분을 처리를 했는데 어제 예산심사위원회 소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께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것은 소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용경 위원님께는 제가 아침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용경 위원님께서 미리 일찍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양해를 못 구한 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이용경 위원님.

○이용경 위원 제가 이것을 한 번에 이해를 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산 환경이, 컴퓨터 환경이 스탠드 얼론(stand alone)에서 네트워크 컴퓨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상에 있으면서 전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자원들이 같이 뭉쳐져 가지고 개인의 전산자원으로서 활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그전에 ‘PC를 점령하고 있으면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이것이 점점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엑셀이나 워드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 배분을 시켜서 데이터를 다시 네트워크로 가져다가 인스톨을 하고 거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 분배해 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를 개인이 사는 것보다 이것을 빌려 쓰고 공동으로 쓰는 이러한 환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그러한 환경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IT가 많이 발달해 있어 가지고 네트워크가 상당히 강한 그런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이러한 트렌드에서 뒤진다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놓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크 사이드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톨 중의 하나로서 상당히 파워풀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서 저희가 사업을 당장이라도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보여 주는 것이 사실 또 저희 문방위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가 좋지 두 장 달랑달랑 갖고 왔다 이렇게 해서 좀 마음에, 성에 안 차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의 알량한 전문성을 담보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이용경 위원님 말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 사업의 중요성이 전혀 경시되어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저희 위원들 자체, 저 자신도 사실은 이해가 얼른 아직은 안 와 있는 상황이고 또 준비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준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불과 예산 책정하는 게 이제 6월 달이면 정부 예산이 전체 윤곽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성호 위원님과 이용경 위원님의 발언 내용을 참작하셔서 반드시 다음 본예산에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김을동 위원** 한마디만요.

○**위원장 고흥길** 예, 말씀하십시오.

○**김을동 위원** 저희들이 회의 때마다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는 것이 한류라는 것이 항상 대두되었었는데요, 이번에 상당 규모의 예산을 늘렸는데도 한류 관련해서 예산이 안 늘어나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했더니 재원 확보하고 필요인력이 상당 부분 참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됐는데 굉장히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반환류, 역한류가 있어서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 보면 굉장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류를 관장하는 아무 부서도 없습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지금 현재 관장을 하지요, 한류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은 콘텐츠 산업 쪽에서 집중적으로 관련을 하고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국제산업교류재단인가 그 재단에서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시아문화교류재단.

○**김을동 위원** 문화재단, 그런데 예산이 전체 1년 예산을 다 털어도 20억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어떻게 이런 범한류(汎韓流)나 이런 데 있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300억 정도의 예산이 문화예술 및 언론기관 인턴 활성화 사업에 있는데 이게 현재로서 시급한 사업이라 이런 데서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가 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꼭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흥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헌 위원님.

○**소위원장 전병헌** 지금 말씀하신 한류 관련 예산은 대체토론에서 정병국 위원님께서, 국제공동제작센터 건립 사업이 유일하게 한류와 상당히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17대 국회 때부터 국제공동제작센터 건립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한류를 일방적으로 침투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교류 속에서 가야 한류가 지속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공동제작센터 건립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는데 이 국제공동제작센터 건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이라든지 예산책정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면 반영을 하는 데 소위원님들께서 아마 전혀 이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계획

도 없었고 구체적인 예산 요구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유감스럽게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소위원들 전원이 앞으로 국제공동제작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충분한 심사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을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좋은 토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매우 유익한 토론이 나왔는데 이 결과는 행정부와 정부 당국에서 다음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다는 것을 기록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관별로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께서는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정부의 동의를 있었으므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재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께서는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정부의 동의를 있었으므로 2009년도 문화재청 추경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께서는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증액한 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정부 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추경예산안 심의 의결된 것에 대해 각 기관장의 인사가 있겠습니까?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이의가 있다는 것을……

○**위원장 고흥길** 이의 있다는 것은 소수의견으로 속기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를 해 주시는데……

이번 추경안에 증액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소위 위원들이나 또 국회 전체 예결위에 참여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우리 위원회의 안대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부 당국에서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11시14분)

○**위원장 고흥길** 인사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일정들이 바빠서서 인사하기 전에 의사일정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위원장 고흥길** 다름이 아니라 오늘 의사일정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을 약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과 5월 휴회기간 동안에 법안심사소위를 저희가 농밀하게,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일부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한나라당 소속의 강승규 위원과 성윤환 위원을 이정현 위원과 안형환 위원으로, 민주당 소속의 이종걸 위원을 전병헌 위원으로 각각 개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일 회기 중에는 다시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월 국회가 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더라도 일단 4월, 5월은 이 위원님들이 하시고 만약에 6월 중에 또 국회가 있어서 다시 필요가 있으면 원하는 대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기관에서는 나중에 한꺼번에 인사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화수 의원 대표발의)(이화수·김우남·강성천·송훈석·조진형·박순자·정진섭·신상진·박민식·이명규·정해결·정갑윤 의원 발의)(계속)

3.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이정현·권영세·성윤환·이경재·김옥이·송훈석·구본철·김무성·한선교·유정복·임두성·유승민·박근혜·홍정욱·유성엽 의원 발의)(계속)

(11시16분)

○위원장 고흥길 의사일정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동 법률안 등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와 대체토론을 이미 마친 법안으로서 의결 절차만 남겨 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상정의 건

○위원장 고흥길 다음은 오늘 신규로 상정하는 법안 순서입니다.

다만 상정 전에 한 가지 의결사항을 말씀드리면 국회법 제59조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으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성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의사일정 제23항 김효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동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관련 법안과의 병합심의 등을 이유로 간사 위원들과의 협의하에 이를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유성엽·강기갑·김성수·홍희덕·최규성·권영길·이윤석·정병국·김우남·이정희·김상희·김영진·이상민 의원 발의)

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김춘진·김소남·송영길·김영진·박은수·강창일·김성곤·이용삼·김재윤·김진표·이상민·김희철·안규백·안민석·양승조·김상희·백재현·이용경·김옥이·최재성 의원 발의)

7.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 의원 대표발의)(권경석·김소남·김태원·신지호·안경률·원유철·유정현·이범래·이은재·장제원·정갑윤·조진형·김성조·이인기 의원 발의)

8.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진성호·현경병·조전혁·강성천·황영철·박선영·김효재·강승규·윤석용·

김동성·박준선·유정현 의원 발의)

9.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0.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호 의원 대표발의)(진성호·백성운·조전혁·정병국·이달곤·안형환·조진래·강승규·성윤환·김금래 의원 발의)
11.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 의원 대표발의)(최구식·임영호·유기준·김태원·안상수·이윤석·이학재·박선영·권영세·신성범·김성수·안효대·임동규·이성현·유원일·김효석·신상진·정해걸·김소남 의원 발의)
12.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윤환 의원 대표발의)(성윤환·강승규·고홍길·김금래·나경원·나성린·박기춘·배은희·변재일·송훈석·안형환·이경재·이정현·진성호·최구식·한선교·허원제 의원 발의)
15.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세환 의원 대표발의)(장세환·최문순·김성곤·김춘진·우제창·유성엽·김종률·이낙연·이명수·변재일·조배숙·김영진·이종걸·서갑원·강창일·강봉균·김재윤·박상돈 의원 발의)
1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창수 의원 대표발의)(김창수·김낙성·김용구·박상돈·이명수·이용희·이재선·이진삼·임영호·심대평 의원 발의)
17.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정영희·권영진·김세연·박보환·조전혁·권영길·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영애·이명수 의원 발의)
18.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원제 의원 대표발의)(허원제·안효대·원희룡·김춘진·임동규·김성수·정양석·원희목·우제창·이시종·이한성·정해걸·현기환·박영아·최구식·한선교·손범규·박대해 의원 발의)
19.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 의원 대표발의)(손범규·유승민·정영희·유기준·유성엽·김태원·이한성·김성수·김효석·임동규·이시종·황영철·박준선·김기현·안상수·이화수·안효대·김소남·허태열·송영선 의원 발의)
21.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병국 의원 대표발의)(최병국·최연희·최인기·이진복·정갑윤·정희수·홍장표·강창일·윤석용·손범규·정의화·장광근·이해봉·최재성·안상수·강길부·주성영·김옥이·유기준·주호영·이인기·강석호 의원 발의)
2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변재일·이종걸·조영택·홍재형·이춘석·오제세·강봉균·양승조·김종률·김상희 의원 발의)
23.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효재 의원 대표발의)(김효재·노철래·한선교·김성순·유기준·강창일·박대해·김성태·윤상현·안홍준·송영길·주호영·황우여·김정권·이성현·손범규·유성엽·안상수·김종률 의원 발의)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정부 제출)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안홍준·김소남·이한성·허범도·임태희·송영선·이성현·진성호·이혜훈·김정권·손범규·권영세·나성린 의원 발의)
26.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영애 의원 발의)
2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상민·안민석·김춘진·권영길·정영희·조전혁·권영진·박보환·김용구·임영호·권선택·이영애·이명수 의원 발의)
28.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식 의원 대표발의)(박민식·권영진·김성식·김성태·김영우·김정훈·이계진·이진복·주광덕·현기환·황영철 의원 발의)
2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0. **방송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경재 의

원 대표발의)(이경재·이인기·이한성·이성현·홍사덕·구본철·백성운·강성천·정영희·정진섭·손범규·임두성·김영우·손숙미·양정례·이운성·송영선·조진래·김무성·이운석·김정권·김태원·이학재·한선교·강승규·성윤환·권영세·김금래 의원 발의)

3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1시18분)

○**위원장 고흥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2항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9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법률안의 명칭과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기관장께서, 장관님과 위원장님 청장님이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인사와 또 통과된 법안에 대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촌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실 이번 2009년 추경예산 확보를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이 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고 또 부처의 노력이 미흡했다는 것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각 사업에 대한 사려 깊은 검토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은 물론 또 정부 예산안에서 미처 반영치 못한 신규 사업도 제안하고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에서 증액하여 주신 사업비 전액이 확보되도록 지금부터라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이 추가경정예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우리 부의 정책과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발전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유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청장님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장 이건무**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09년도 문화재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전병헌 소위 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재청은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을 통해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고 가치를 알리는 데 있어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증액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문화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님, 추경안에 대한 인사와 법안 통과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장님 그리고 더욱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이정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그리고 이화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심의과정에서 그리드서비스시스템 등 첨단 통신 입법들에 대해서 열렬히 논의하는 과정을 보면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 예산에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오후 부산 MBC 50주년 행사에 참석해도 괜찮다고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최시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상정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김춘진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진 의원** 존경하는 고흥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전북 고창·부안 출신 김춘진 의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회개혁과 반침략의 가치를 내걸고 일어난 위대한 민족운동이며 근대국가를 여는 기초인 평등사회와 자주 국가를 지향한 혁명운동인 동시에 국권수호운동의 효시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200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5년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 특별법 제정 직후 9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 차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기념일을 제정하지 못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선양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활발한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확보의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제정하되, 기념일 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동학농민혁명 관련 지역의 이견으로 인한 갈등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념일을 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원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의 설립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 또는 개인 등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재산을 기부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를 신설했습니다.

둘째, 정부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을 정하여 각종 행사를 하도록 하며, 기념일을 정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를 신설했습니다.

셋째,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정하도록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본 법안이 시행됨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과 의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법안 개정 취지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셔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김춘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리 김 의원님 외에도 유성엽 의원님, 권경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유인물로 대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제안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특별히 이의가 없으시면 김춘진 의원님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머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8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민수 수석전문위원과 임중호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9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간사위원님들과의 협의 결과에 의해서 질의시간은 특별히 정하지 않고 위원님들의 양식에 따라서 적절히 요점만 질의를 해 주시면 대체토론 결과를 소위에다가 회부하도록 하고, 또 오늘 시간이 없어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서면으로 대체토론을 해 주실 경우 반드시 속기록에 회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이 있는 데까지 대체토론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조영택 위원님, 발언하신다고 했지요?

○조영택 위원 예, 저는 오늘 상정된 법안 말고 제가 지난번에 상정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에 대해서 특별적립금 규모를 줄이자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를 해서 국민체육투표권 및 경륜특별적립금 내역 분석을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3월 18일에 회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원장님이나 나경원 위원님께서 그 결과가 회부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 법안 심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심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흥길 나경원 소위원장님, 잘 들으셨지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택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강승규 위원님!

○강승규 위원 간단히, 제가 법안소위에서 이번에 배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소위 말하는 MVNO(재판매사업자)에게 도매제공 조건이나 절차·방법 등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지난번 우리 방통위 쪽에서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면 이 대가 산정에 대한 기준고시를 하지 않고 시장기능에 맡기고 사후규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법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그렇게 한 이유나 시장의 기능, 또 자칫 기준고시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재판매 부분이 실질적으로 경쟁을 유도해서 통신요금 인하라는 당초의 목적

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우려가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재판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의 원가산정 등에 있어서 도매제공 조건들이 까다로워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판매 제도에 대한 도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 고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소위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대체토론 내용을 하시면 속기록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님, 예결위 참석하셔야 된다고 하셨지요?

○문화재청장 이건무 예.

○위원장 고흥길 지금 이쪽에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재청차장 김찬 예.

○위원장 고흥길 그러면 차장님 앉아 계시고 청장님은 예결위로 가시고요.

다른 정부기관에서도 예결위에 꼭 필요하신 분은 참석하셔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양해를 해 드릴 테니까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들어 가지고 그것을 법안심사소위에 넘기는 게 우선 중요한 일차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대리인이 참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금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금래 위원 방송통신기본법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법 제정은 타당한데, 내용 중에 보면 계획에 따르면 기본법 제정을 하고 나서 방송통신사업법은 2012년이나 입법이 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법적 공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법의 입법 시기를 좀더 앞당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15조에 보면 시행령에 의거해서 방통위 인가를 받아서 방송통신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회는 인가대상일 뿐만 아니고 예산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민간단체가 아닌 반관단체 성격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존의 방송협회나 케이블TV방송협회와 역할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방통위 진흥업무

만 시행하는 정책기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발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방송통신사업법은 2010년까지 시행되도록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래 위원** 그러니까 그동안의 공백기에는 법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너무 기간이 길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차질이 없도록 입법 시기를 2년 정도 당기도록 조치를……

○**김금래 위원** 예, 가능하면 좀 당겨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진흥협회 문제는 방송협회하고 케이블방송협회 등과 업무 중복이 되는 부분은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정할 것이고, 이것은 협회 명칭만 변경한 것이지 사업에 관한 이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중복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금래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성윤환 위원님!

○**성윤환 위원** 성윤환 위원입니다.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에 우선 통신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두 번째는 특정 업체가 주파수를 전부 독점할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에 대한 구체적 대책은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경매대금이 높아져서 통신요금이 올라갈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이미 실증분석을 해 온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미국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무상 할당할 때보다도 오히려 요금이 더 하락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시행 경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30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이 4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매제를 도입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 부작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부작용에 대해서 주파수 독점 현상을 걱정하고 계신데 할당 신청자들의 범위를 제한한다든가 주파수 총량제한제도를 뒤 가지고 주파수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도적으로도 현재 전파법이라든가 그 시행령에 이미 주파수의 총량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신경을 써서 모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환 위원**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감사합니다.

이용경 위원님!

○**이용경 위원** 정부가 제출한 저작권법 102조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그 분야에 있어서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것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이 계정을 해지할 때 당사자의 이메일 계정도 같이 없어지게 될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해지가 아니고 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러면 다른 계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메일 계정이라든지 메신저 계정 이런 것들도 같이 없어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뭐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용경 위원** 아니, 정지라고 그래서요, 동시에 못 쓰게 되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썽요.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이 경우에 저작권법을 어기면 그것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데 딱것까지 같이 처벌이 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건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안 하는 것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ISP의 경우에는 계정 하나 가지고 이메일도 받고 그다음에 자기가 올리기도 하고 업로드도 하고 그러는데 저작권법을 어긴 부분만 사용권한을 제한하고 이메일이나 메신저는 계속 쓸 수 있게 해 줄 수 있나요, 기술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게 아마 따로 돼 있을 때는 가능할 거고요.

○**이용경 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아마 같이 정지가 될 겁니다.

○이용경 위원 그것은 좀 처벌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대개 지금 어쨌든 지난번 법안 올라간 것 자체가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도, 사실은 조금……

○이용경 위원 글썩, 그렇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처벌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판 쪽의 권한은 계속 살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게 저작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벌금을 매기거나 이러한 것은 말이 되지만 판 쪽의 사용권한까지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처벌의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좀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로 묶여 있을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용경 위원 글썩,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사실은 저작권이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용경 위원 아니면 아마 이메일이나 메신저만은 그 계정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판 쪽으로 판 계정을 개설하게 해 놓고 거기로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서비스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좀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 대안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시행을 해 보면 금방 아마 그 문제에 대한,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용경 위원 미리 연구 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다음에 103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권리주장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침해자의 성명과 주소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게 이렇게 해 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냥 그렇다고 그러시면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런데 이 권리주장자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이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쥐서는 안 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용경 위원 이런 것은 시행령에서 나오나요, 어떻게 돼요? 권리주장자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건 시행령에서 조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다음에 104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것,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잠깐만요.

○이용경 위원 예를 들어서 암호화가 돼 있을 경우 그것을 풀지 못하게 하고 기술 같은 것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야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암호화를 풀지 못하게 했지만 특별한 경우, 4호에는 “국가의 법 집행, 정보수집 또는 안전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정보수집이라고 그러면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남용될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이건 저작권에 관련된 분야니까요.

○이용경 위원 아니에요. 글썩, 아니, 아니야. 암호화를 풀지 못하게 해 놨거든요, 지금. 풀지 못하지만 국가의 법 집행이나 정보수집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 이 ‘정보수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특별한 정의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놔둬 가지고는 남용의 여지가 크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법안소위 할 때 이것을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법안심사소위원님들……

○이용경 위원 지금 장관님께서 여기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돼야 하는데요, 그런데 저작권에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이용경 위원 저는 그냥 이런 것을 국가 안전에 위해가 되는 테러, 전쟁, 이러한 특별한 경우로 국한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정보수집이라는 막연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비친고죄 140조, 거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이렇게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런 경우인데 이제 문

제가 우리나라의 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 이런 학생들도 지금 다운로드받고 그러는데 자기가 이게 범법인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용경 위원 그리고 그것도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봐요, 이 청소년들. 그래서 저는 이 ‘상습적으로’라는 말을 이것 당연히 넣어야 되겠지만 조금 계도기간을 뒤 가지고 좀 늦춰서 먼저 교육을 시킨 다음에 해야지 안 그러면 어린 학생들까지도 다 범법자로 만들 위험성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미 작년부터 굉장히 지금 교육 부분 강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지금 무르익었다는 말씀이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무르익었다고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하고 또 이 문제는 이용하는 청소년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중간에 또 사이트를 개설해서……

○이용경 위원 그러니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상습적으로’라는 말 그냥 한마디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개는 그 부분에 해당이 더 많이 된다고 봐야지요.

○이용경 위원 글썄, 그렇지만 법이라는 것은 ‘이건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용경 위원 그래서 그것은 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이용경 위원 시차를 두고 하든지 안 그러면, 국민들을 갖다가 다 범법자로 만들면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렇게는 안 되지요.

○위원장 고흥길 이용경 위원님,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더 계속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래서……

○이용경 위원 위원장님, 저는 법안소위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경재 위원 법안소위 못 들어가는 위원 많아요.

○이용경 위원 MVNO, 위원장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정할 때 그 근거를 가입자 위주의 시장점유율로 합니까, 아니면 매출을 위주로 합니까? 매출 위주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매출 위주로……

○이용경 위원 그렇게 하고 역무를 갖다가 다 없애는 것, 그래 가지고 잘못하면 부가통신 쪽의 영세사업자들이 기간통신사업자들한테 소위 짓밟힐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무슨 판…… 저도 이 규제를 푸는 것은 찬성하지만 영세사업자들, 특히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돼야지 거기서 진짜 새로운 비즈니스가 창출되고 그러는데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그냥 무자비로 그쪽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별한……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보완조치는 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용경 위원 할 것은 많지만 이따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이용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자, 허원제 위원님.

○허원제 위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고흥길 위원장, 전병헌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정부에서 발의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8조3항을 보면, 앞의 2항에 있는 네 번째 ‘방송통신콘텐츠에 관한 사항과 또 방송통신 광고에 관한 사항은 그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소위 콘텐츠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하위 법령으로 이관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에 있는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법 92조에 보면 92조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해서 문화체육부장관이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법상으로 보면 법에서 콘텐츠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사업으로 정리해 놓고 있고, 지금 새로이 발의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으로는 그 콘텐츠사업의 관계를 하위법으로 이관을 지금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양 부서가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의 내용과 방송법상의 내용 자체가 다소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장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경재 위원님 그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문순 위원님……

○장세환 위원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대체토론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현안만 간단히 한 3분 정도에 걸쳐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광고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오는 4월 30일부터 전주국제영화제가 전주에서 본행사가 열리는데 유인촌 장관님, 최시중 위원장님 또 고흥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실 것을 초청합니다.

어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이재웅 전 의원께서 임명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콘텐츠진흥원장은 콘텐츠제작사업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고도의 윤리성과 창발성이 요구되는데 그런데 이분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전에 2006년도에 여성 성 비하 발언으로 해 가지고 대단히 물의를 빚었고 당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차마 이 회의 석상에서 적시하기가 좀 낯부끄러운 내용들이 많던데 그런 분을 이런 자리에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대단히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분인데 정말 재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론에서는 낙하산 인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낙하산 인사도 문제이겠지만 그보다 비윤리성이 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장관한테 재고를 촉구합니다. 답변은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회계 변경에 따른 사업의 위태성 문제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영화발전기금 임의 집행 부분에 대한 것도 그때 확인해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회의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해도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새만금 사업이 여러분 다들 잘 아

시다시피 내년이면 완공이 됩니다. 완공되면 방조제 길이가 33km로 세계 최장입니다. 기네스북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가 될 거고 그것은 비단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엄청난 관광유인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또 더군다나 문광부하고 전라북도하고는 얼마 전에 관광정책 협약을 맺는 MOU도 체결하고 했는데 마침 내년이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그래서 서울 방문의 해가 내년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서울 방문의 해가 아니고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장세환 위원 한국 방문의 해 해서 서울에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울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서울은 따로 또 하는 거고요.

○장세환 위원 그래서 서울과 지방 이렇게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 더군다나 세계 최장 방조제가 되고 하니까 그렇게 나눠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 새만금을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우리 부 창출에 더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년 같은 기회가 정말 호기가 아닌가, 장관께서 깊이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전라북도하고 충분히 협의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세환 위원 제 질의는 이따 끝나고 뒤에 해주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병헌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재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최문순 위원님 다음에…… 그때까지 제가 사회를 보게 되면 이경재 위원님 다음에 김을동 위원님……

○이경재 위원 문화부장관님,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내셨는데 이것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을 전부 개정해서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겠다는 뜻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 위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산업의 정의에 영화, 비디오물, 음악, 게임, 출판, 인쇄, 정기간행물, 방송영상물, 문화재, 디지털문화콘텐츠 등 거의 모든 문화산업 영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경재 위원 여기 문제는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원제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영상물은 문화관광부가 관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경재 위원 그리고 문화진흥법에도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이 미묘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건데 문산법이나 방송법은 1999년도인가 과거 방송위원회가 행정기구로서 출발하기 전에 방송위원회가 규제기구로서의 민간기구로 했을 때 정부정책을 수행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문광부에 위임했던 겁니다. 제가 죽 그 분야 행정을 해 왔고 또 법안을 제출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기구까지도 출범했기 때문에 과거 방송위원회의 규제적 성격에서 이제는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는 기관까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영상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전병헌 간사, 고흥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방송통신 기본법안에 보면 방송영상물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다 이렇게 그쪽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셔야 된다, 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쪽이 됐든 방송영상콘텐츠를 잘해 주는 쪽으로 손을 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부 간에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법률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문화산업진흥법안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기본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률이 또 있거든요, 각 장르별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법에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대로 개별적인 장르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한 법안이 별도로 존재해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사실은 지난번에 이미 저희들이 공공성과 상업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입장 정리는 충분히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해서 방통위와는 충분히 역할 분담이 되었고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지금 사실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경재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기본법이 있는데 개별 특별법이 필요한가, 거기에 통합시키면 되는 것인가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뭐 그것은 조금 더 그러면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디지털콘텐츠하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법, 저작권법 이것을 다 합치면서 사실은 일괄 통할하게 정리했거든요.

○이경재 위원 하여튼 실무자들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잘 판단을 하셔서 토론할 때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 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 공익적, 민간 상업성 구분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논쟁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현장의 구체적 문제에 들어가서는 절대 그 기준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마련한 방송통신 기본법안을 논의를 하실 때에 거기에 구체적인 방송영상에 관한 기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고 어떻게 협의체를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남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먼것부터 최시중 위원장께 질문했더니 앞뒤 재지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논의를 못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화부에서 낸 이 법안도 그렇고 방송콘텐츠 진흥법안도 그렇고요. 지금 결론은 그것은 조금 유보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만든 기본법을 만드실 때 양쪽에서 잘 조절을 하셔서 그 틀을 완전히 만들어 놓으시면 이 부분은 그 하위법으로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적용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심사소위에서 앞뒤 선후 가리셔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고흥길 이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을동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을동 위원 지금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정보통신기본법 개

정안을 마련하신 것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 제공, 재판매제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법으로 정해 놓지 않았을 뿐이지 기간사업자인 LG텔레콤하고 KTF가 13개 사업자들에게 재판매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김을동 위원** 그런데 KT를 비롯한 소매업자들의 가입자 수와 매출액하고 수익이 현재 어떻게 됩니까? 현재 그게 나와 있습니까, 매출액 수입 같은 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KT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주 영세합니다.

○**김을동 위원** 그렇지요. 290만 명을 확보한 KT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사업신청자, 소매업자 재정능력에 대한 허가 기준이 자본금 3억 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그렇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이렇게 소매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능력만 심사해서 허가해 준다는데 이러다가 사업 능력이 안 되는 소매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 사업이 되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지금 재판매사업자의 등록 기준은 3억 원이 맞고요. 그런데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부분 영세사업자가 선불요금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판매사업자에게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지금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매사업자의 경영 악화에도 이용자 구제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시 이용자 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을동 위원** 그리고 현재 절차를 부처 고시로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심사과정에서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등록 기준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래요. 만약에 소매업자의 기술력이라든가 재정능력 등에 대한 기준을 본 법은

아니더라도 대통령령 정도에 규정해 놓는 것이 이 같은 우려를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현재 등록 기준이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김을동 위원** 알겠습니다.

소매업자가 정상 경영이 불가능해질 경우 가입자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제도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홍길 위원장, 나경원 간사와 사회교대)

○**김을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경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문화산업진흥법을 개정해서 통합 진흥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방송콘텐츠만 딱 떼어 가지고 방통위에서 한다는 게 진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문화콘텐츠는 전부 다 융·복합이 추세인데 이렇게…… 그리고 다량의 콘텐츠가 방송을 매개로 유통이 되는데 방송만 따로 떼어서 관장하겠다 하는 것은 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방통위가 자기들이 어떤 것을 좀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방송만 따로……

○**김을동 위원** 방송콘텐츠를 방통위 소관으로 따로 하려고 해서 이 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콘텐츠 진흥 영역은 전체적으로 다 문화부가 관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콘텐츠 쪽은 역시 문화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이것은 예를 들면 영화니 음악이니 게임이니 출판이니 모두가 별도의 개별 진흥 법률을 두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차원으로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다.

○**김을동 위원** 그런데 지금 모두 통합하고 융·복합이 현재 추세인데 방송콘텐츠만 딱 떼어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경원** 김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국 위원** 위원장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하는 이유가 재판매제도를 도입을 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통신요금을 인하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병국 위원 그런데 그러한 취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거기에만 너무나도 치중을 하다보면, 지금 현행법을 보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보호대책에 대한 허가 심사를 엄격하게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병국 위원 그러나 재판매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던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정병국 위원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요, 이 별정사업자들의 여러 가지 횡포로 인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재판매사업자의 경우는 모두 다 보험에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험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주는 피해는 없도록 하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병국 위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인터넷신문도 신문이 아니냐, 그러니 그 지역에 있는 인터넷신문도 지역신문으로서 지원에 관한 법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인데 등록을 지역에서 했다라고 해서…… 인터넷이 지역적 한계를 갖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인터넷신문 자체는 이미 전국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신문 하면 한정적인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했을 때 지역신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산에서 했다고 해서 이것이 부산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정병국 위원 인터넷신문까지도 지역신문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역신문으로 넣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나경원 그다음에는 최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문순 위원 앞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웅 신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임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KBS 이사장을 통해서 KBS 사장을 몰아내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고 해서 구설에 올랐던 분이고 그 이후에 EBS 사장설, 아리랑TV 사장설, 이렇게 끊임없이 나돌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결국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내정되어 오셨습니다.

제가 3월 11일자 경향신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 핵심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정책기획본부장을 지낸 이재웅 전 한나라당 의원이 콘텐츠진흥원장 후보로 우선 고려되고 있다’, 3월 11일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일단 이 전 의원과 박준영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장 등을 3배수로 추천한 뒤 이 전 의원을 최종 낙점하는 모양새로 진행되고 있다’ 이게 경향신문의 보도입니다. 3월 11일자입니다. 지금 그대로 됐습니다. 들러리 선 분 이름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3월 18일자 한국콘텐츠진흥원 직원공동 대책위 성명을 읽어 보겠습니다. ‘정치적 안배 차원에서 원장 인사가 파행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공동대책위는 일치단결하여 강력하게 싸울 것이다’ 여기서 ‘이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분’입니다. 신문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이것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내정되어 있다…… 그리고 공모 절차를 밟았지만 요식행위이고 허위로 밟아서 이렇게 들러리 선 분까지 명단이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그동안에 아마 여러 분이 여기에 응모를 하셔서 사실은 상당히 시간도 걸렸고 또 굉장히 심도 있게 인터뷰하신 심사위원들이나 또 여러 과정을 굉장히 어렵게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번에 선임되신 분이 그동안 17대 국회에서 같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보다는 여기 상임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갖고 있는 경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신임 콘텐츠진흥원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의회에서 경험이나 또는 행정적인 면이나 또는 콘텐츠 관련해서 이미 지난 17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하셨고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깊이 있게 그 과정을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신문에 여러 가지 사실이,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인사 문제는 늘 그렇게 거론이 되고 나오기는 합니다만 글썬요 사실 저희들로서는 이게 굉장히 진통을 많이 겪으면서 선임이 된 경우라서요……

○**최문순 위원** 그 진통을 경향신문이나 언론계에서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습니까, 누가 같이 응모하는 것까지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아무래도 알게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여기에 많이 응모했는데 그런 부분이 다 걸러지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세 분이 아마 최종적으로 마지막까지 인터뷰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응모한 분 중에서 저희들이 선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최문순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정교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문화예술인들을 함부로 다룬 사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대량 해고 사건, 우리가 문화국가가 되려면 예술인, 연기자, 예능인을 귀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연예매니지먼트법을 발의했고 장관께서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법 이전에 현장에서 이분들을 좀 존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대량 집단해고를 장관께서 직접 주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근거를 대보겠습니다. 1월 8일 날 국립오페라단 합창단 이소영 단장께서 이분들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녹취록입니다.

“문광부와 문화관광부장관의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40명 자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광부장관께서는 수차례 저와 개인적인 만남도 있었지만—이소영 단장과 개인적으로 만나서—국립

단체장들 앞에서 그리고 문광부 직원들 앞에서 아주 확실히 국립오페라 합창단의 해체를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관께서 직접 지시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더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장관님께서 결자해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실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문제는 ‘해체를 한다’ 이런 수순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을 내몬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그 본인들보다 주위에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나서는 바람에 더 꼬였고 또 실제로 처음부터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다 준비를 했는데도 그분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 물론 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도 많이 섞여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득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 과정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단원들 어제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의견 교환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실은 서로가 후회도 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자꾸 문제가 야기가 되는 바람에 오히려 더 많이 어려워진 점이 있습니다.

○**최문순 위원** 알겠습니다.

(나경원 간사, 고흥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이것은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믿고요……

○**최문순 위원** 그런데 어제도 만나서 반말하신 걸로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 따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중재안을 내겠습니다, 이게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국립합창단 오디션을 보라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최문순 위원** 지금 이분들이 응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디션에 응해서 재고용이 되면 국립오페라단의 레퍼토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보장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 실력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디션도 볼 수 있고, 오디션에 합격해서 단원이 다시 될 수 있고 그러면 오페라

단에 다시 출연할 수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문순 위원** 국립오페라단의 레퍼토리에 참여하도록 공개적으로 약속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할 수 있습니다.

○**최문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못마땅하지만 국립합창단의 오디션에 응하도록 저희도 한번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들 잘 좀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흥길** 최문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진성호 위원님부터입니다.

○**위원장 고흥길** 진성호 위원님, 가급적이면 서면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 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첫째는 오늘 제가 보니까 생산적인 회의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제한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질문을 하고 싶은 분이 여러 분이 있으면 다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좀 공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오늘 회의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생산성이 없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국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안 상정을 오늘 30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30개를 할 때에는 이유도 있을 테고 할 텐데,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10월 달에 발의했는데 한 번도 상정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분들하고는 이야기할, 그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나경원 간사하고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간사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나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특정 방송사나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성역은 하나씩 없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문방위에 성역이 하나

있습니다, MBC입니다. 왜 MBC와 관련된 법은 상정도 안 합니까? 토론도 안 합니까?

그리고 MBC의 앵커 1명만 교체되면 문화체육부장관하고 할 때는 ‘신재민 차관 당신이 바꾼 것 아니냐’, 방통위원장이 나오면 ‘최시중 위원장이 뒤에서 이것 바꾼 것 아니냐’,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은 상당히 부당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문방위가 일을 해야 되는데, 물론 MBC 문제를 문제 제기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렇게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과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대통령후보가 MBC 앵커 출신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오히려 MBC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더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MBC하고 관련된 법 자체의 상정도 왜 막는지, 이것은 우리 나경원 간사하고 전병헌 간사께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상대 의원의 법안을 평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야 간사는 여야 간사한테 주어진 권리만 행사하십시오. 자기가 데스크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 예결위 회의 때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결위 위원장은 예결위 위원장이 예산을 확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결위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정 그게 안 되면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회법이 딱 있는데 마치 위원장이 위원장의 허락으로 이것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것은 국회법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자기 발언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십시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한테 허가 받아서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산 이런 것들도 좀 당당하게……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문제를 예산을 했는데 반대한 분과 찬성한 분은 다 기록에 남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비판받을 때는 국회에서 이것을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남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인촌 장관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이용경 위원님 물어보신 것 있잖아요, 이메일이나 블로그 같은 경우 블로그가 문제가 되면 블로그만 닫고 이메일은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나 다음같이 조금 발전된 회사는 정계 수위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네이버에서는 활동하면 안 된다' 할 때는 아예 퇴출시키는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블로그만 폐쇄하고 이메일은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흥길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들 간에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에 법안 상정할 때 유의해서 빠지지 않고…… 저희 현재 방침은 모든 법안을 다 상정한다는 원칙이 이미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우선순서대로 상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고흥길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장세환 위원 가능하면 문방위에서 싸움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존경하는 진성호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한마디쯤은 해야 할 것 같아 가지고……

무슨 지적도 겹쳐하게 수용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하거나 또는 입법 과정을 거쳐 갈 때 상대방 위원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간에 서로 지향점이랄지 가치관은 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당의 나름대로 당론이 있는 것이고 그 당론에 입각해서 또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는 결코 나를 인정시킬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창수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자유선진당 김창수입니다.

문광부장관님, 제가 제출한 법안 중에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이 있는데 이 법안을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대표발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창수 위원 크게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010년 9월까지 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그래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좀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 운용을 지금까지는 문광부장관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완전 주도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그 기금의 관리 운용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 이런 법안으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시적인 것을 좀 더, 그냥 시간을 두지 말고 더 하자는 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신문협회라든지 기타 기관을 다 빼고 또 지역신문이나 다른 기관이 위원을 선정하는 데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조금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다 추가로 그런 데가 한두 군데 더 들어가서 같이 추천한다면 좀 더 보편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지금 뉴스통신진흥법이 정부 입법으로 발의가 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 적용 시한을 한 6년 정도 효력을 갖는 것으로 했다가 이번에 개정안에서 그것을 삭제를 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신문발전과 관련된 법도 시한 연장만 하지 말고 일단은 시한을 폐지를 했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입법 취지가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봤을 때 그 법을 폐지해도 좋을 듯한데 어떻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창수 위원 그다음에 최시중 위원장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전파법, 아까 주파수 경매제도에 대해서 죽 여러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2011년에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김창수 위원 그래서 주파수를 재분배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뉴질랜드에

서 1989년에 처음 도입된 주과수 경매제도를 우리도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로 이런 제도를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매제도를 할 경우에 사업자 간 담합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경매대금을 높이 쓰다 보니까 고액 낙찰에 따른 이용자 부담의 전가 가능성 이런 게 있고요. 아까 최 위원장께서 주과수 총량제라든지 참여에 일정 부분을 제한을 두어서 독점 가능성을 없앤다고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이런 경매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는 주과수를 독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실한 답변을 줘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담합이 있을 경우에는 현행 공정거래법 조항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매보증금을 그대로 몰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행 전과법에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할당받았을 경우에는 주과수 할당 자체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없도록 할 것이고, 있다면 그에 따른 처벌이 따를 것이고, 과징금 제도라든지 형사 처벌 이 모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자 간 담합이라든가 이러한 현상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는 보장적 장치를 여러 가지 법적으로 규제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러한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조치나 대안을 법이나 시행령에서 확실히 담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령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법 개정안을 낸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니요, 시행령은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전과법 15조의2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주과수 할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과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이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제도도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번에 법이 개정된다면 시행령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보증금에 관련된 조항도 아직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개정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보면 주과수 경매 시 최소경

쟁가격을 정하고 경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최소경쟁가격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방통위에 보증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데 보증금의 범위가 이 법안에는 없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것은 시행령으로 포함될 겁니다.

○김창수 위원 그것을 다 시행령으로 모두 위탁할 게 아니고 모법에 어느 정도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현행법에 있는 제4항과 같이 예를 들어서 최소경쟁가격의 100분의 10, 100분의 15 이런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는 그게 좀 불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제도화되면, 법률화되면 좋겠고 법제화 안 되더라도 시행령 과정에서 김 위원님 뜻을, 그런 의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주과수 할당 대가를 지금까지 죽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현재까지 주과수 할당 대가로 받은 게 얼마 정도 되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 액수는……

○김창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7개 사업장에서 총 3조 1795억 원의 할당 대가를 받았습시다. 앞으로 이게 경매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할당 대가로 받는 금액이 더 커질지, 그렇겠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커질지 적어질지는……

○김창수 위원 당연히 올라가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마 시간적으로 봐서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흥길 김창수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 예.

그런데 주과수 할당 대가는 결국은 공공의 자원인 전과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라는 말이지요. 따라서 그 사용처나 용도에 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은 주파수 할당 대가의 배분 비율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문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할 게 아니라 주파수 할당 대가의 어떤 배분 비율을 국회 동의를 얻어서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할당 대가가 나와서 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김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법제화해 주신다면 그것에 따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시행령 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김창수 위원** 적지 않은 액수가 적립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국회의 동의 내지는 심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저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흥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정배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장관께 이재웅 콘텐츠진흥원장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재웅 원장을 실제로 언제 낙점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잘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사실은.

○**천정배 위원** 이재웅 원장이 2006년 12월 달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모인 공식석상이나 다른 없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성적 비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님들이 성명서 낸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런 분이 더구나 다른 데도 아니고 문화부 소속기관의 기관장으로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콘텐츠진흥원장이 지난해에 ‘문

화’라는 말을 빼는 것부터 나는 수상하다고 봤는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라고 해서 무슨 단순 기술자입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문화 콘텐츠 진흥을 책임질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그것은 아주 개인적인 부분이고 또 사생활적인 부분이라 하여간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공모했기 때문에 장관은 모르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렇고, 일단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를 않았으니까요.

○**천정배 위원** 그런데 아까 최문순 위원께서 지적하셨고 다 했지만 이미 다 짜놓은 대로 지금 된 거란 말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짜놓지는 않았습시다. 그걸 짜놓고 그렇게 오랜 기간을……

○**천정배 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분에 대해서는 모르면서 짜놓지 않은 것은 어떻게 잘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왜냐하면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사실은 이것은 심사위원 다 정하고 외부의 한두 분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정배 위원** 그러면 더더욱 문제네요. 장관께서 이 인사에 대해서 아무 상황도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서 어떻게 짜놓지 않은 것만 하나요? 이것은 차라리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것은 이 인물 자체의 적정성도 문제지만 말은 공모라고 하면서 사실은 다 그냥 임명한 것 아닙니까? 이재웅 전 의원이란 분이 무슨 이유로…… 전문성이 있습니까? 지금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고 하등의 문화부 소속의 콘텐츠진흥원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이유라면 정치적인 이유밖에 더 있습니까? 이분이 친이계입니까, 친박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천정배 위원** 이것은 국민기만행위입니다. 차라리 그냥 임명하세요, 제도 바뀌서. 왜 공모한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사람 낙점해서 말이에요, 공모에 응모한 옆의 사람들만 바보 만들고, 이것은 국민들을 기만하고 국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이 제도부터 바꾸고 나서 이재웅

원장 같은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안 권경석 의원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소위 심사에 반영해 주라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다시 재심을 요구하거나 또 심지어는 제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행정쟁송제도하고 비교해서도 법률체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이지요? 또 실제 왜 이 법안을 발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동학혁명에 관한 위원회 활동을 독립적인 활동을 제약하고 결국 국무총리가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근대사, 현대사를 왜곡시키고 또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뉴라이트 악법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점을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한미 FTA 후속조치 관련 법안이라는 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왜 한미 FTA가 아직 발효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법안부터 먼저 만들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법안입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 법안 만들어져 가지고 법안의 규율을 받게 된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이미 저작권 부분은 상당 부분 시행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영화쿼터제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다 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아니, 지금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영화쿼터제도 선결 조건으로 준 것은 국익상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물어봅시다. 지금 저작권이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늘리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늘리는 건데, 그러면 다른 나라하고도 따져 볼 수 있지만 우선 한미 간에만 따져 보면 우리나라에 이익입니까, 손해입니까, 이것만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당장은 손해지요.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저작료를 우리가 더 받게 되겠지요, 얻어오는 것보다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럼 우리 국익상 손해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그것은 당장 그렇지만 우리가 길게 앞을 봤을 때는 우리의 저작물도 지금 많이 도둑맞고 있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한미 FTA가 발효했다고 하면 이것은 그 한미 FTA의 약속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전체적인 국익에도 맞는 거지요. 그러나 한미 FTA 발효도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우리한테 손해볼 입법을 먼저 합니까?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아니 그러니까 이것……

○천정배 위원 그다음에 복제 문제 말이에요, 아까 이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일시적 저장이 복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서 그걸 포함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천정배 위원 포함시키면 결국 이것도 우리 네티즌들, 네티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저작자, 우리 연구자, 우리 국민들에게 불편해집니까, 아니면 좋아집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것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천정배 위원 아니, 다른 소리 하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지요, 이것은 저작물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아니, 미국하고 관련된 한도 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을 꼭 미국하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체적인 면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천정배 위원 아니, 당장……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일시

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 이것은 당장은 우리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것인데 이것을 한미 FTA가 지금 발효가 되기도 전에 정부가 이렇게 먼저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우리는 비준이 된 다음에……

○천정배 위원 비준하고 또 발효하는…… 비준되고, 비준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비준동의가 되고 비준이 되고 발효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천정배 위원 현재로서는 발효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아직 비준 여부가 불투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소위에서 적어도 앞으로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이 안은 계류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천정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최 위원장께 묻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데요. 지금 가상이동망사업 도입에 관해서 도입 자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요, 공청회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우선 법체계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만들어 온 법을 보니까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지정고시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야 물론 되겠지요. 그런데 그 지정고시 할 때 지정의 요건이라는 것이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법은 지금 바지저고리이고 앞으로 사업규모라든가 시장점유율을 대통령령, 그것도 ‘시장점유율 등’이에요. 또 다른 것도 마음대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지금 우리 헌법체계상 옳은 겁니까? 국회는 그냥 바지저고리……

뭐 하라고 이 법안을 제출합니까, 그냥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냥 시행하시지?

사업규모라든가 시장점유율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건도 안 정해졌단 말이에요. 사업규모가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이라든가 다른 것은 그런 것이라도 있지요. 시장점유율도 50% 이상이라든가 30% 이상이라든가 무슨 과점사업자라든가 최소한의 요건도 없이 그저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대체 이런 입법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아니, 지금 정부가 공식으로 제출한 법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데 정부로서는 사업자와 서비스의 지정주기를 매년 정하도록 해 가지고……

○천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님 생각입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형태의 극단적인 백지위임 입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천 위원께서 지적하면 일리가 있는 걸로 봐야지요.

○천정배 위원 그다음에 일단 그런 도매제공의 무서비스가 지정고시되면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간의 협정을 맺게 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천정배 위원 그 협정의 조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같은 제33조의8제4항에 있군요. 여기는 대통령령도 아니에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이러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합니다’ 이게 하등의…… 이걸 뭐 하라고 국회에 갖고 왔습니까? 국회가 하등의 무슨 기본 조건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가 마음대로 도매제공의 조건·절차 및 방법을 정해서 고시하도록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극단적인 백지위임 아닌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하여튼 실무적인 그것은 더……

○천정배 위원 아니, 우선 실무 좋아요. 제가 전문지식 묻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위원장의 인식

이 중요합니다. 이런 입법이 옳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하여튼 뭐……

○천정배 위원 국회가 할 일이라고는 이 법만 들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 조건·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한다’ 하는 말만 해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 그 조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절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업계의 의견도 굉장히 엇갈리고 이해관계도 엇갈릴 것이고, 앞으로 그런 고시할 내용이 있으면 방통위에서 최소한도 이것을 기본적인 기준은 법에 만들고 그 법의 위임에 따라서 방통위에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러니까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지고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도 다 전문가적 수준을 갖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해 주시면 심의대로 따르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물론 그러셔야 되지요, 국회에서 법 정하는데 안 따를 수야 없는데.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따르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이런 형태의 극단적 위임입법은 헌법 위반, 위헌입니다. 위헌일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에 대한 무시이고,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사실은 좀 모욕감을 느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것보다도 위원님께서 모욕감을 느끼기 전에 실무적으로 그런 것을 소홀히 한 무식의 소치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천정배 위원 하여튼 이 점도 앞으로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추후에……

○천정배 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천정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걸 위원님, 하십니까?

○이종걸 위원 예.

○위원장 고흥길 이종걸 위원님 토론해 주세요.

○이종걸 위원 저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부장관님,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작권법 정부 제출은. 그러니까 이게 한미 FTA 후속 법안으로 한 것들이 많지요, 내용들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그 한미 FTA의 내용에 있다는 이유로 토론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

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소위에서 충분히 상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아니, 그런 입장을 가져주셔야지 소위에서 볼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한미 FTA 규정이 어떻게 보면 오바마 정부에서 자동차협상뿐 아니고 여러 가지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준도 늦어지고? 우리도 그럴 때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작권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밀린 게 많아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저도 이것 할 얘기가 많은데 그냥 좀 미루어 둡니다. 글썄요, 이것은 그냥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내버려두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가지고 방통위원장님, 지금 보면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셨는데 도매제공 재판매사업 말이지요, 이게 지난 17대 때 제출되었다가 폐기되어서 다시 온 겁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다들 공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이렇게 시장 기능에 맡겨서 통신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효과가 있겠다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33조의8을 보면 말이지요, 모든 고시의 기준을 보면 말이지요,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대부분 다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조의8만 도매 재판매와 관련된 내용만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빼 버렸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게 수평적으로 망 보유자가 도매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자들과 산정하는 과정에서 상하관계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 뺀 이유를, 그런데 이게 없으면 자율거래에 의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 가격 높히 해 버리면 도매할 사람이 없어요. 기왕에 이렇게 재판매사업에 합리적인 대가로 도매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게 만드는 것이 낫지 이것 왜 뺐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에 17대 때는 이게 들어 있었어요. 설명하실 분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데 17대 때에는……

○**이종걸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면 더 좋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17대 때는 사전 규제를 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시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종걸 위원** 말씀해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17대 국회에서 도매규제 가격까지 정부가 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도 있었지요.

그다음에 도매규제 가격을 결정하는 나라가 저희가 알아보니 아이슬란드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시장에 맡기되 사후적 규제와 재정을 넣습니다. 재정에다가 이걸 넣음으로써……

○**이종걸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무슨 아이슬란드만 해요. 그렇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 이게 많이 쟁점이 되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예, 그때 많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종걸 위원** OECD 국가 중에서 아이슬란드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예, 가격 규제하는 나라는 아이슬란드뿐입니다.

○**이종걸 위원**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단니까. 좀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망 보유 사업자가 시장 지배력이 굉장히 높을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자율거래라는 취지로 도매가격 그냥 책정해 버리면 그 가격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사람들도……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그러니까 90일 내에 협정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정부가 재정에 들어갑니다. 재정을 60일 내에 한쪽에서 수(sue)를 걸지 않는 한 그것은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가 중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적 금지행위에 이걸 넣어 가지고 약탈적 가격으로 한쪽이 유통자가……

○**이종걸 위원** 그렇게 우회하실 필요가 없지요. 원래 했던 대로 하세요. 33조의8, 대가 산정……

왜 그러나 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법체계상으로도 보면 33조5호 보세요. 33조의5에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그래 가지고 1, 2, 3항에 보면 여기도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 산정 등에 관한 기준” 이렇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매 관련된 상호접속, 그다음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예.

○**이종걸 위원** 국장님, 34조의6 보세요. “상호접속 등 협정 신고 등”에 보면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도매제공”…… 도매제공 다 똑같이 들어 있으면서 왜 이것만 빼난 말이에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지난번 17대……

○**이종걸 위원** 가격을 규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가 그러면 이 조항만 필요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들어가 있는데?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위원님 지난번 17대에서는 또 그렇게 했더니 과도한 규제라고 분명히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이종걸 위원** 누가 지적을 했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 그러면 이것 다 빼야지. 그러면 가격 규제에 관련된 내용은 다 빼야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그런데 가격 규제는 안 하더라도 정부가……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 하나만 빼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이 없어요. 갑자기 살짝 빼 것은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해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그래서 재정을 할 수가 있도록 저희가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중재할 수 있도록.

○**이종걸 위원** 우선 사전·사후는 나중에 보더라도 망 지배력이 높은 사업자와 도매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 교환 자체가 부등가 교환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그렇기 때문에 금지도 있고 재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걸 위원** 아니, 여기에만 그 규정을 얘기하는 게 뭐난 말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대가 규제를 빼는 것은 무슨 다른 의혹이 있거나 흑심이 있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대가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17대 때 지적도 있고 하니까 그건 빼는 것 같

는데 심의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포함시켜 주십시오.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 이런 대가 산정에 관한 규제,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한 6개 조항과 다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가 산정하는 규정이 없으면 망 보유 사업자가 자기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서 높은 도매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어쩔 수 없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거의 의미가 반감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그 취지가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보시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오히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이종걸 위원 29조5항 이 경우에는 말이지요. 별정·부가 통신사업자 이 경우에는 또 약관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사실 망사업자들이 설비제공협정이라든지 상호접속협약에 의해서 했던, 그래도 망사업자, 그 투자를 많이 한 사람의 어드벤티지가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망사업하려고 하겠어요? 누가 투자하려고 하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지금 별정사업자 중에 큰 사업자는 보편적 손실보전금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만 있고 별정사업자의 큰 사업자 중에는……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이것도 보면 투자를 집행해야 될 사업자가 점점 줄어들고 투자 없이 수익을 확보하려는 사업자의 급증을 초래해서 통신사업 중장기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전부 그걸……

○이종걸 위원 그러니까 별정과 부가 통신사업자와 그래도 기간통신사업자 간에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차이나 무엇인가 이점은 있어야 되겠지요. 이렇게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별정사업

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큰 사업자는 상호접속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것은 이용약관으로 풀고자 이용약관으로만 하는 의무를 배제한 것입니다.

○이종걸 위원 이용약관이 없어지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제 말씀은 맞지요? 별정·부가 통신은 그냥 망사업자에게 부가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차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가 망사업자 하려고 하겠어요?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그러니까 별정사업자에서 큰 사업자는 보편적 손실보전금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상호접속과 같은 것을 풀어주고 그런 것의 의무가 없는 별정사업자는 이용약관을 두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종걸 위원 큰 사업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방송통신위원회통신정책국장 신용섭 현재는 300억……

○이종걸 위원 망사업자 하다가 자본금이나 사실상의 자산을 그쪽으로 다 이전시켜서 별정사업자를 만들어 버리지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사업자들이 그렇게 하겠지요. 뭐하러 망 투자를 하겠습니까? 투자에 대한 어드벤티지는 있어야지. 이것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이종걸 위원님.

○이종걸 위원 그리고 36조의3(금지행위)에 보면 “공급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위원장님, 공급비용 그러면 원가, 판매가 굉장히 비용이 많은데 공급비용 이것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이종걸 위원 36조의3의 금지행위, 시간이 많이 되어 가지고 제가……

○위원장 고흥길 이종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은 월요일까지 전부 이것을 해주시면, 서면으로 토론 후에 제출해 주시면 전부 속기록에 반영하고 법안심사소위 때 참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훈석 위원님 하신다고요?

전병헌 위원님이 아까서부터 대기를 하셨으니까 전병헌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전병헌 위원 서울 동작구 전병헌 위원입니다.

오늘 점심시간도 거르고 두 장관님과 소속 공무원들 에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답변을 좀 잘 해 주시면 짧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유 장관께서는 오늘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답변 내용을 보니까.

콘텐츠진흥원장 결정이 언제 되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제, 그제……

○전병헌 위원 잘 몰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며칠 되었습니다.

○전병헌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며칠 되었다고요.

○전병헌 위원 며칠 되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전병헌 위원 그런데 저는 유 장관의 답변 내용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청와대가 투하한 낙하산 인사라 하더라도 임명권자는 유인촌 장관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있다더라, 많이 심사한 것 같다더라’라는 식의 답변 태도는 대단히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유 장관의 답변 태도는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본인의 소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 남의 일 답변하듯이 그런 답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 장관의 답변 태도로 볼 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재웅 전 의원을 잘 아는 관계입니다만 이재웅 콘텐츠진흥원장이 청와대가 투하한 낙하산 인사라는 점을 유인촌 장관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로 볼 때 확인이 된 것입니다.

청와대가 언제 낙점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쨌든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제가 직접 지명을 하는 인사라면 몰라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이 있고 심사위원이 있고 거기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답변드린 것도 그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인이 올라왔을 때 그 3인 중에 과연 누가 좋은가 그래서 저는 인사검증 마지막까지 해서 거기에 살아남는 분을 결정하겠다 해서 인사검증 부탁해서……

○전병헌 위원 그 공모 과정에서 3월 19일까지 콘텐츠진흥원설립위원회에서 공모를 해서 여러 사람이 공모한 것을 심사해서 3인으로 압축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3인으로 압축해서 3월 19일날 문화부에 제청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3인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 3인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제대로 된 심사를 했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장관의 지금 답변 태도나 내용을 보면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심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심사위원들이 하지 않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저는 보고를 받는 거지요.

○전병헌 위원 심사한 결과를 보고를 받는데 임명권자는 장관이기 때문에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지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소상하고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답변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 답변의 여러 가지 수사적인 언술 수식어나 태도로 볼 때 이 결정 과정에서 장관은 사실은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을 했고, 즉 그것은 청와대가 투하한 낙하산 인사이다라는 점을 반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언제 낙점해서 장관에게 이야기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언제 낙점했는지 뭐 그렇게……

○전병헌 위원 그러면 낙점 안 했어요? 낙점 안 받았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 결정했습니다.

○전병헌 위원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병헌 위원 장관께서 제가 볼 때는 여당·야

당 위원을, 제가 야당 위원임을 떠나서 장관이 좀 소신 있게 답변도 하고 책임 있게 답변하고 그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데 청와대가 낙점해서 투하한 낙하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답변을 할 때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그리고 그런 수식어로 답변해서는 곤란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장관의 입장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보다도 존경하는 전병헌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라는 콘텐츠진흥원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최시중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구글코리아 대표 만났습니까? 구글코리아 대표 만났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안 만났습니다.

○**전병헌 위원** 지난번에 구글코리아 대표를 만나서 제한적 실명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라는 답변 하셨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전병헌 위원** 언론탄압 아니에요? 인터넷 탄압 아닙니까? 이제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탄압도 모자라서 세계적인 인터넷 업체까지 탄압을 해가지고 더욱더 국가 망신을 시키시려고 나서실 거예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구글코리아 문제는 정말 저희들은, 애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구글코리아가 그것을 폐쇄했다 그러지만 그 나라 이름만 폐쇄했지 한국어는 전혀 폐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로 두드리더라도 한국어 터치하면 다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편법일 뿐입니다. 영업상의 편법을 가지고 우리가 한국 인터넷 문화의 수치라든가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병헌 위원** 최시중 위원장께서는 위치가 지금 어떤 위치입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취

임을 하셔서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기까지는 바깥으로 알려지기에는 대통령의 멘토이고 사실상 현 정부의 실세 중 실세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최시중 위원장께서도 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

○**전병헌 위원** 그렇게 알려져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보도가 몇 차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알고 있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렇다면 1개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대표를 위원장이 직접, 정권의 실세가 직접 대표를 만나서 그리고 만나기 전에 국회에서 법률적 검토를 거치겠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식의 엄포용 발언을 하고 포털 대표를 만난다면 그 포털 대표는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시는 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직접 한다는 것보다는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진상을 조사해 보고 진의를 파악해 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여당 위원의 추궁에 위원장께서 직접 만나서 물어보고, 진의를 알아보고 법률적 검토를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시중 위원장이 직접 만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모두발언에서 만났느냐 그랬더니 아직 안 만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최시중 위원장께서 직접 만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니 최시중 위원장께서 직접 나서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된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이미 실무자들에게 진상을 파악하도록 지시를 해 두었고……

○**위원장 고흥길** 전병헌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정책관 황철중** 네트워크정책관입니다.

○**전병헌 위원** 당신한테 묻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최시중 위원장의 결정 여부를 내가 묻고 있으니까 당신 앉으세요.

○**위원장 고흥길** 들어가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제가 국회에 그런 말

숨을 드린 후에 실무자에게 대표를 만나도록 해서 진상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연락을 했는데 시간 조율이 안 돼서 아직 못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대로 빨리 알아서 그 문제에 대한 파장까지를 포함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그와 같은 조치가 압력이나 탄압으로 비쳐질 걱정이나 우려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구글이라는 업체가 세계적인 그리고 세계를 대표하는 인터넷 업체인데 압력을 그렇게 쉽게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병헌 위원**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역설적으로 방통위원회나 대한민국이 망신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런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전병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지난 4월 10일 날 제한적 실명제 조치와 관련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구글의 입장과 관련해서 해명자료를 내놨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참여정부 때, 포털 사이트 평균 1일 검색 수 30만 명을 기준으로 했던 그 기준을 지난 1월 29일 날 시행령을 개정해서 10만 명으로 낮춰서 불과 20여 개의 대상 포털 사이트를 140여 개 가까이 확장을 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인데 마치 이것이 전임 정권에서 저질렀던 일을 본인들이 해명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 제도가 2007년에 시행됐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간에 구글뿐 아니라 여러 업체가,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법률에 대해서 전혀 거부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만이 그렇게 했는데 그 진상을 보면……

○**전병헌 위원** 본질적으로 제한적 실명제의 대상 사이트가 37개에서 153개로 지난 1월 28일 날 최시중 위원장님의 주도로 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기존에 37개였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그렇게 개정이 돼서 153개로 늘어나면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해명을 해야지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대단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통신기본법을 이번에 일단 상정을 했는데, 이 방송통신기본법을 만들게 된 방송통신의 기본자산은 뭐니까? 전파이지요, 전파?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그렇습니다.

○**전병헌 위원** 전파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이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전병헌 위원**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방송통신기본법을 제정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이 관련 업계나 또는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쪽에서 공청회를 단 한 차례만 했더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충분하게 여론 수렴이 안 됐다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체계적인 법률을 새롭게 제정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여한 점도 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서둘러서, 여론 수렴이 부족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공공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공의 복리증진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48개 조항 중에서 단 2개 조항에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공공의 복리증진에 대해서 굉장히 차별 시 됐고 가볍게 평가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점은 알고 계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공공복리라는 측면은 어느 누구도 가볍게 보거나 그렇게 할 사회도 국가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것을 가볍게 평가해서 그렇게 됐을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졸속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해 당사자들의 다각적인 견해를 포함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전병헌 위원**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폭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얼마든지 동의합니다.

○**전병헌 위원** 더 질문을 하고 싶은데 점심을 굶은 상태이셔서 답변하는 데 상당히 힘드셔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송훈석 위원님.

○**송훈석 위원** 끝까지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우리 문화부장관님께 물을게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이 콘텐츠진흥정책에 대해서는 문화부가 담당하고 또 정보통신기금은 지경부가 담당하는데 이원구조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송훈석 위원** 이원구조이다 보니까 정책 예산이 연계가 잘 안 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송훈석 위원** 그래서 정보통신기금 중 콘텐츠진흥 부분에 대한 투자는 좀 분리해서 문화부에서 소관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장인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송훈석 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송훈석 위원** 그리고 온라인게임 분쟁의 경우 게임분쟁조정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중복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송훈석 위원** 이것도 기능 조정을 해서 단일화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통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훈석 위원** 또 저작권법 개정안, 이것은 저작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침해의 사실을 소명하는 것만으로 저작권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제공을 해 주나요, 판단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송훈석 위원** 그런데 그 사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침해 소지가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송훈석 위원** 이런 것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송훈석 위원** 그리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방송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때 제재수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허위·과장 광고를 했을 경우……

참, 방송통신위원장님 답변이네요.

제재수단이 없네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제재수단이……

○**송훈석 위원** 그러니까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같은 걸 부과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의견인데요, 어떻습니까?

실무자가 답변해도 돼요.

실무자, 어때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운영과장 김재철** 방송운영과장입니다.

주의·경고,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제재조치가 있는데요, 다만 재정적 조치인 과징금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송훈석 위원** 없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운영과장 김재철** 예.

○**송훈석 위원** 음란 퇴폐 폭력 같은 경우는 위반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운영과장 김재철** 그렇습니다.

○**송훈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보완할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방송운영과장 김재철** 저희 당초 개정안에는 과징금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마는 정부 협의 과정에서 타 부처의 이의 제기로 인해서 규제 신설을 사유로 해서 빠졌습니다. 마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과징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훈석 위원** 잘 됐네요.

또 전파법 개정안, 우리 위원장님.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송훈석 위원** 이것은 과거 국정감사에서부터 제기가 됐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있는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한 게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매제를 도입할 경우.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기존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이 간다든가 어느 대역에 대해서 할당 방법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준다든가 그것은 아직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할당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되면 그때 시장 상황이라든가 경쟁적 사항의 존재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훈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이게 의무적으로 재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송훈석 위원**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계약 자유와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공정경쟁, 자율 시장 확보를 위해서 이것은 모두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훈석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의무적으로 한다는 그 자체가, 재판매, 그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송훈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보면 KBS를 제외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는 단순사업자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는 경우 MBC와 KBS 2TV는 민영화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훈석 위원** 민영화로 돼 가는 건가요, MBC하고 KBS 2TV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망이 어때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아직 그 방침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송훈석 위원** 개인적인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MBC 현안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훈석 위원** 자율적으로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예.

○**송훈석 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송훈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걸 위원님 간단히 끝내 주십시오.

○**이종걸 위원** 문화부장관님, 저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병헌 위원님……

제가 빠트릴 수가 없어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지금 매머드급으로, 5개 연구원과 진흥원을 합쳐서 말이지요. 그런데 모두 다 거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작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명박 정권에 이렇

게 인물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썄, 그런데 잘 아시지 않나요? 기록이나 약력을 봐서는 콘텐츠 쪽에서 사실은 지식이나 또 행정적인 경험이나 또 지난번 17대 상임위에서 방통위원장을 한 역할이나 이미 이쪽으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종걸 위원** 지금 우리 여당 위원들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같은 상임위에서 활동하던 분들이요. 반콘텐츠, 낙하산, 또 더더군다나 반여성적인 인사를……

요새 이 정권에서 들어서, 출세하는 분들은 왜 이렇게 여성에 대한 비하 발언이 많아요, 과거 경력도 그렇고? 이분들 말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못 들어 봤습니다.

○**이종걸 위원** 제가 얘기한 거 죽 한번 읽어 드릴까요?

‘골프도 못 치지 성매매방지법으로 거기도 못 간다’…… 17대 국회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가 뭘지는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심한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 14일 날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종걸 위원** 그래서 보니까 “본인은 제일 전문가라고 하던데요?” 이러면서……

제가 임명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우리 장관님 어떻게 하셨어요? 탄청 부리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는 최종 검증이 올라간 상황이었고……

○**이종걸 위원** 언제 임명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임명은 어제 했습니다.

○**이종걸 위원** 그런데 14일 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저께……

○**이종걸 위원** 그리고 지금 벌써 낙점인사라고 해서 다 소문이 나고 낙하산이 이미 내려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2일 전에 제가 물어보는데 탄청하고 있었어요.

지금 장관님 답변 태도가 여기 국회 무시하는

겁니까? 우롱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쨌든 검증된 결과를 제가 받아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종걸 위원** 2일 사이에, 전혀 만칭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2일 사이에 이게 결정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니, 뭐 꼭 그렇다면 더 이따가 결정할 수도 있었어요, 제가 연락을 받았어도.

사실 그런 것하고는 조금 관계는 없는 겁니다.

○**이종걸 위원** 한 달 전부터 이게 무성한 얘기가……

제가 2일 전에 14일 날, 그것도 말이지요, 15일 날 16일 날 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인사는 항상 그 전부터 늘 그렇게 소문이 나고……

○**이종걸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게 14일이고 그 2일 만에 전격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때 14일 날 우리 장관님의 답변 태도라는 것은 만칭이었던 말이지요.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 안 들으려면 제가 결정 안 하고 더 이따 해도 돼요, 5월 달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걸 위원** 14일 날 대답하실 때는 전혀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거기에 대한 의견도 거기에 대한 결정도 없는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때는 최종 검증이……

○**이종걸 위원** 그런데 2일 만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최종 검증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종걸 위원** 왜 그런데 바로 국회 끝나자마자 이렇게 결정을 해 버렸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결과가 오면 하겠다, 그런데 결과가 왔으니까 이걸 계속 더 미루지 말고 그냥 임명을 주는 게 낫겠다고 결정을

한 거지요.

어제 임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고흥길** 이종걸 위원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늘 상정한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32항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9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진한 대체토론은 서면질의를 통해서 주시면 충분히 속기록에 반영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서면질의하신 위원은 변재일 위원님, 조영택 위원님, 김금래 위원님, 성운환 위원님, 강승규 위원님, 천정배 위원님, 장세환 위원님, 이용경 위원님, 송훈석 위원님, 최문순 위원님 등의 서면질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각 기관장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서면질의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임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문화체육관광부장관님, 문화재청장님, 방송통신위원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점심도 거르시면서 이렇게 장시간 회의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 또 우리 정부 관계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4월 20일에 개의하여 오전에는 문화재보호기금법안에 대하여, 오후에는 문화재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문화재 관련 5개 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흥길** 예, 말씀하세요.

○**이종걸 위원** 콘텐츠진흥원 심사위원들의 심사 평가서 그것 좀……

○위원장 고흥길 예, 자료 요청, 문화관광부에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심사소위에……

동학농민기념일 제정에 관한 것만 좀 의견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마다 다 기념일 제정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소위에서 좀 잘 의논을 해주십시오 하고요.

○위원장 고흥길 예.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25분 산회)

○출석 위원(25인)

강 승 규	고 흥 길	김 금 래	김 을 동
김 창 수	나 경 원	변 재 일	성 윤 환
송 훈 석	안 형 환	이 경 재	이 용 경
이 정 현	이 종 결	장 세 환	전 병 헌
정 병 국	조 영 택	주 호 영	진 성 호
천 정 배	최 구 식	최 문 순	허 원 제

홍 사 덕

○위원 아닌 출석 의원(1인)

김 춘 진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 석 전 문 위 원	최 민 수
전 문 위 원	임 중 호
입 법 심 의 관	정 창 모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	유 인 촌
기 획 조 정 실 장	곽 영 진
문 화 콘 텐 츠 산 업 실 장	모 철 민
종 무 실 장	권 경 상
콘 텐 츠 정 책 관	김 중 울
저 작 권 정 책 관	심 장 섭
미 디 어 정 책 관	김 기 흥
문 화 정 책 국 장	강 봉 석
예 술 국 장	박 순 태
체 육 국 장	최 중 학
도 서 관 정 보 정 책 장	임 원 선

문화재청

청 장	이 건 무
차 장	김 찬
기 획 조 정 관	김 중 진
문 화 재 정 책 국 장	서 영 애

사 적 명 승 국 장	엄 승 용
문 화 유 산 국 장	김 창 준
국 립 문 화 재 연 구 소 장	김 봉 건
한 국 전 통 문 화 학 교 총 장	이 중 철
국 립 고 공 박 물 관 장 직 무 대 리	정 중 수
국 립 해 양 유 물 전 시 관 장	성 낙 준
한 국 문 화 재 보 호 계 단 이 사 장	김 흥 렬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명 구
방 송 통 신 융 합 정 책 실 장	설 정 선
방 송 정 책 국 장	황 부 군
통 신 정 책 국 장	신 용 섭
융 합 정 책 관	서 병 조
진 파 기 획 관	차 양 신
네 트 워 크 정 책 관	황 철 증
방 송 운 영 관	김 준 상
대 변 인	이 태 회